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연업조합법시행규칙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염업조합법」 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염업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656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의 처분을 하도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업조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11. ~ 9. 2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 규제 신설·강화 의견

해양수산부령 제 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의 내용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를 이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행하지 않은 경우 나.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다. 직원에 대한 감봉 요구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정안
신설	해양수산부령 제 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정 2025.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업무정지의 내용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나.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다. 직원에 대한 감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617